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3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이수진 · 전진숙 · 정춘생
민병덕 · 김 윤 · 남인순
백혜련 · 이인영 · 김예지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1조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1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4제2항제1호 중 “정지”를 “정지 또는 중지”로 한다.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심신미약자 등의 급여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수급자가 스스로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2179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를 “시설의 개선,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략) <u><신 설></u>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u>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u> <u>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u> <u>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제2</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1조

항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
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
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

-----. 다만,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
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복
지 급여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
-----제4항-----

-----.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_____

② ~ ⑦ (생략)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① (생략)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복지 급여 지급의 정지

2. (생략)

<신 설>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정지 또는 중지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심신미약자 등의 급여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

<신 설>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폐지 또는 <u>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u> 1. ~ 3. (생략) ② ~ ④ (생략)	<u>로 수급자가 스스로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u> 제1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 ----- ----- ----- ----- -----<u>시설의 개선,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